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 번 호	14522
-------------	-------

발의연월일 : 2025. 11. 25.

제안이유

최근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생산된 허위조작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속·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국민의 명예와 인격
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과 여론 왜곡을 초래하는 문제가 지속적으
로 심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법령은 허위조작정보를 별도로 규율하지 않아,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도 실효적 규제와 책임부과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허위조작정보는 기존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결합하거나 조직적·상업적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유포되는 특성이 있어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회복이 어려운 만큼, 보다 강화된 법적 책임과 구제 장치

가 요구됨.

이에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불법정보 수준의 규제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온라인 정보환경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되어 타인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 분명한 허위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여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킨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성·피해규모·부당이득 등 고려요소를 명시함(안 제44조의11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공개 대상자 등 공적 감시가 필요한 인물과 대기업 및 언론사의 주요주주·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에서 면제함(안 제44조의11제6항 및 제7항 신설).

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공익적 문제 제기, 사회적 감시, 정당한 비판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제70조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공하는”을 “직접 제공하거나 게재자를 통하여 제공되는”으로 한다.

4. “게재자”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한 정보를 게재하거나 제작된 정보를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제44조의7제1항제2호 중 “사실이나 거짓의”를 “거짓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부터”를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로 한다.

2의2.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되어 타인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 분명한 허위정보 (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

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1(손해배상책임)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제44조의7제1항의 불법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

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액수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보 유통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손해액 증명이 가능한 손해 영역 외의 별도 손해 영역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게재자 가운데 정보게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고의로 제44조의7제1항의 불법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의 기간 · 횟수

5. 행위자의 재산상태

6.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⑤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의 유통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2. 해당 정보의 유통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제3항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언론사의 주요주주, 임원 등은 청구의 주체에서 제외된다.

⑦ 제3항의 경우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 등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보도

제70조 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u>게재자</u> ”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한 정보를 게재하거나 제작된 정보를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u>제공하는</u>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 -----직접 제공하거나 게재자를 통하여 제공되는----- -----.
5. ~ 13. (생 략) ② (생 략)	6. ~ 14. (현행 제5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하게 <u>사실이나 거짓의</u> 사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거짓의-----

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신 설>

3. ~ 9. (생 략)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 ⑤ (생 략)

<신 설>

2의2.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

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되어 타인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 분명한 혐위정보(이하 “혐위조작정보”라 한다)

3. ~ 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의11(손해배상책임) ① 고

의 또는 과실로 제44조의7제1항의 불법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액수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보 유통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손해액 증명이 가능한 손해 영역 외의 별도 손해 영역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게재자 가운데 정보게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고의로 제44조의7제1항의 불법정보를 정보

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원은 손해 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의 기간 · 횟수

5. 행위자의 재산상태

6.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⑤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의 유통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
어진 경우

2. 해당 정보의 유통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
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

⑥ 제3항의 경우 「공직자윤리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
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대기업 및 언론사의 주요
주주, 임원 등은 청구의 주체에
서 제외된다.

⑦ 제3항의 경우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
등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
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
련한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
에 대한 언론보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p><u>제70조(별 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② · ③ (생 략)</p>	<p><u>준하는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 한 사항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보도</u> 제70조(별 칙) <삭제> ② · ③ (현행과 같음)</p>
--	--